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1. 11. 23.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7일

○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 및 타 시·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일·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당직(일·숙직)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보상 차원에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당직수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(1회 2명 근무)과 10개 교육지원청(1회 1명 근무)이고, 추가 소요액은 연간 5,800만원 정도임.

- 현재 전국 시·도교육청과 도내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수당 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(단위: 천원)

전국 시·도 교육청																충북 도청
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
50	<u>60</u>	50	50	50	50	<u>60</u>	50	60	50	<u>60</u>	50	<u>60</u>	50	50	<u>60</u>	60

- 전국 시·도교육청과 도내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수당 지급 금액에 비추어 볼 때, 본 조례 개정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직 수당을 인상하면서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